

## 민원종류

일반민원

## 제목

서부지검 개돼지 검사 서청원을 고소한다

## 내용

고소인: 김명호

피의자: 서청원, 서부지검 검사

제목: [형법] 제123조의2(법왜곡)

피의자 서청원은 서부지검2026형제11091(혐의, 주차장법 위반 등, 피의자, 김현환) 사건 담당 검사로서, 김현환의 주차장법 등 위반 범죄가(첨부자료1) 100% 명백하게 드러나고 김현환의 톨마니 이주철 경위가 김현환의 범법행위를 입증해 주었다(첨부자료2)

공익 검사로서 피의자 서청원은

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한 김현환을 직무유기+직권남용죄 적용 기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였다(첨부자료3), 이는 [형법] 제123조의 2를 저촉한 범죄

범죄 키우는 이런 개돼지 검사 새끼는 엄벌에 처함으로써, 검찰에서 해고해야 한다.

## 첨부 파일

첨부파일2.jpg 첨부파일3.jpg 첨부파1일.pdf

---

## 처리기관 정보

### 처리기관

대검찰청